

# 안산시 금고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1639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07. 12. .

제 출 자 : 안 산 시 장

## 제안이유

- 『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기준』(행자부 예규 제240호) 개정사항이 통보(2007.6.1)됨에 따라 안산시 금고지정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고자 함.

## 주요내용

- 가. 금고 지정시 수의계약에 대한 규정을 행정자치부 예규에 따라 정비하여 규정함(안 제3조).
  - “1개 금융기관이 경쟁에 참여한 경우에” 를 “재공고 입찰을 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한 경우로” 개정하여 규정함(안 제3조제1항제1호).
  - 경쟁에 의하여 지정된 금융기관을 재지정하는 경우 해당금융기관의 재무구조의 안정성 및 업무관리능력 등 금고업무 수행에 적정여부를 판단 후 지정 하도록 함(안 제3조제1항제2호).
  - 시가 경기도의 금고 금융기관을 당해 금고로 지정하는 경우와, 금융기관이 안산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특정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하는 경우에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하여 규정함 (안 제3조제1항제3호 및 제4호).
- 나. 금고로 지정받은 금융기관의 약정 체결기간 “10일” 을 “20일” 로 개정함 (안 제12조제2항).
- 다. 금고지정을 위한 배점기준 중 일부 배점기준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여 규정함 (안 별표).

개정 조례안 : 별첨

**신·구조문대비표 : 별첨**

**관계법령발췌서 : 별첨**

- 『지방재정법』 제77조(금고의 설치)
- 『지방재정법시행령』 제102조(금고업무의 약정)
- 『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기준』 (행정자치부예규 제240호)

**관련사업계획서 : 해당없음**

**예산 수반사항 : 해당없음**

**사전예고결과 : 의견없음**

- 입법예고 : 2007. 11. 5 ~ 2007. 11. 16 (11일간)

**기타 참고사항 : 별첨**

- 「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」 (행정자치부 예규 제240호) 준수 촉구 공문  
(경기도 : 2007. 10. 17)

# 안산시 금고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안산시 금고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4호 중 “제133조” 를 “제142조” 로 한다.

제3조제1항 중 “경쟁을 실시하여 1개 금융기관이 참여한 경우에” 를 “경쟁을 실시하여 1개 금융기관이 참여하고 재공고 입찰을 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한 경우로서” 로 하고, 같은 항 제2호 중 “경쟁에 의하여 지정된 금융기관을 재지정하는 경우” 를 “경쟁에 의하여 지정된 금융기관을 재지정하는 경우로서 해당 금융기관이 재무구조의 안정성 또는 업무관리능력 등 금고업무 수행에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” 로 하며, 같은 항에 제3호와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3. 시가 경기도의 금고 금융기관을 당해 금고로 지정하는 경우로서 해당 금융기관이 재무구조의 안정성 또는 업무관리능력 등 금고업무 수행에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
4. 금융기관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특정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하는 것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
제4조제1항제3호 중 “시민이용 편의 및 지역사회 기여도” 를 “시민이용 편의성” 으로 하고, 같은 항 제5호 중 “시와 금고간 협력사업 추진능력” 을 “지역사회 기여 및 시와 협력사업 추진능력” 으로 한다.

제12조제2항 중 “10일” 을 “20일” 로 한다.

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소관 실과		세정과
입 안 자	실과장 직위·성명	세정과장 권혁수
	담당 팀장 직위·성명	세외수입담당 유정숙
	담당자 전화번호	유정숙 (481-2185)

[별표]

금고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(제4조 관련)

평가분야	평가항목	배점
	총계	100
1.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	소계	35
	가.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	10
	- 국외 평가기관	(6)
	- 국내 평가기관	(4)
	나. 주요 경영지표 현황	25
	- BIS 자기자본 비율	(9)
	- 무수익 여신비율	(7)
	- 자기자본 이익율	(6)
- 대손충당금 적립율	(3)	
2. 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수준	소계	18
	가. 정기예금 예치금리	6
	나. 공금예금 적용금리	5
	다. 시에 대한 대출금리	4
	라. 수시입출금식 예금금리	3
3. 시민이용 편의성	소계	19
	가. 지방세입금 수납처리 능력	9
	나. 관내 지점 현황 및 시민이용 편리성	5
	다.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증진방안	5
4. 금고업무관리능력	소계	18
	가. 세입세출업무 자금관리 능력	5
	나.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	5
	다.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 능력	5
	라. OCR센터 운영	3
5. 지역사회 기여 및 시와 협력사업 추진능력	소계	10
	가. 지역사회기여 실적 및 계획	5
	나. 시와 협력사업 추진 실적 및 계획	5

#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용어의 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.</p> <p>1. ~ 3. (생략)</p> <p>4. “기금”이라 함은 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「지방자치법」 제133조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설치·운용하는 자금을 말한다.</p> <p>5. ~ 6. (생략)</p>	<p>제2조(용어의 정의) -----</p> <p>-----</p> <p>1. ~ 3. (현행과 같음)</p> <p>4. -----</p> <p>-----</p> <p><u>제142조</u>-----</p> <p>-----</p> <p>5. ~ 6.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3조(금고지정) ①시장은 경쟁방법에 의하여 안산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의 금고업무를 취급하기 위한 금융기관(이하 “금로”라 한다)을 지정하여야 한다. 다만,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안산시 금고지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의 방법으로 지정할 수 있다.</p> <p>1. <u>경쟁을 실시하여 1개 금융기관이 참여한 경우에 그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하는 경우</u></p> <p>2. <u>경쟁에 의하여 지정된 금융기관을 재지정하는 경우(다만, 재지정은 1회에 한하며 재지정 기간은 당초 약정기간을 초과하지 못함)</u></p> <p><u>&lt;신설&gt;</u></p> <p><u>&lt;신설&gt;</u></p>	<p>제3조 (금고지정) ①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1. <u>경쟁을 실시하여 1개 금융기관이 참여하고 재공고 입찰을 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한 경우로서</u>-----</p> <p>-----</p> <p>2. <u>경쟁에 의하여 지정된 금융기관을 재지정하는 경우로서 해당 금융기관이 재무구조의 안정성 또는 업무관리능력 등 금고업무 수행에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</u>-----</p> <p>-----</p> <p>3. <u>시가 경기도의 금고 금융기관을 당해 금고로 지정하는 경우로서 해당 금융기관이 재무구조의 안정성 또는 업무관리능력 등 금고업무 수행에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</u></p> <p>-----</p> <p>4. <u>금융기관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특정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하는 것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</u></p>

현행	개정안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<p>제4조(금고지정 평가기준) ①경쟁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한다.</p> <p>1. ~ 2. (생략)</p> <p>3. <u>시민이용 편의 및 지역사회 기여도</u></p> <p>4. (생략)</p> <p>5. <u>시와 금고간 협력사업 추진능력</u></p> <p>제12조 (금고약정) ① (생략)</p> <p>②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<u>10일</u> 이내에 금고약정서에 따른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.</p>	<p>제4조 (금고지정 평가기준) ①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1. ~ 2. (현행과 같음)</p> <p>3. <u>시민이용 편의성</u></p> <p>4. (현행과 같음)</p> <p>5. <u>지역사회 기여 및 시와 협력사업 추진능력</u></p> <p>제12조 (금고약정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</p> <p>-----<u>20일</u>-----</p> <p>-----</p>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<p>[별표]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안산시 금고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(제4조관련)</u>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"> <thead> <tr> <th style="width: 15%;">평가분야</th> <th style="width: 60%;">평가항목</th> <th style="width: 25%;">배점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&lt;신설&gt;</u>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100</td> </tr> <tr> <td rowspan="6" style="vertical-align: middle;">1. <u>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</u>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&lt;신설&gt;</u>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35</td> </tr> <tr> <td>가.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15</td> </tr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&lt;신설&gt;</u>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&lt;신설&gt;</u></td> </tr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&lt;신설&gt;</u>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&lt;신설&gt;</u></td> </tr> <tr> <td>나. 주요 경영지표 현황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20</u></td> </tr> <tr> <td>- BIS 자기자본비율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(7)</u></td> </tr> <tr> <td>- 자기자본이익율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(5)</u></td> </tr> <tr> <td>- 무수익여신비율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(5)</u></td> </tr> <tr> <td>- 대손충당금적립율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(3)</u></td> </tr> <tr> <td>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&lt;신설&gt;</u>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18</td> </tr> <tr> <td rowspan="4" style="vertical-align: middle;">2. <u>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</u></td> <td>가. 정기예금 예치금리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5</u></td> </tr> <tr> <td>나. <u>시에 대한 대출금리</u>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5</td> </tr> <tr> <td>다. <u>공금예금 적용금리</u>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5</u></td> </tr> <tr> <td>라. <u>수시입출금식 예금금리</u>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3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평가분야	평가항목	배점		<u>&lt;신설&gt;</u>	100	1. <u>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</u>	<u>&lt;신설&gt;</u>	35	가.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	15	<u>&lt;신설&gt;</u>	<u>&lt;신설&gt;</u>	<u>&lt;신설&gt;</u>	<u>&lt;신설&gt;</u>	나. 주요 경영지표 현황	<u>20</u>	- BIS 자기자본비율	<u>(7)</u>	- 자기자본이익율	<u>(5)</u>	- 무수익여신비율	<u>(5)</u>	- 대손충당금적립율	<u>(3)</u>		<u>&lt;신설&gt;</u>	18	2. <u>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</u>	가. 정기예금 예치금리	<u>5</u>	나. <u>시에 대한 대출금리</u>	5	다. <u>공금예금 적용금리</u>	<u>5</u>	라. <u>수시입출금식 예금금리</u>	3	<p>[별표]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금고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(제4조관련)</u>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"> <thead> <tr> <th style="width: 15%;">평가분야</th> <th style="width: 60%;">평가항목</th> <th style="width: 25%;">배점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총계</u>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100</td> </tr> <tr> <td>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소계</u>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35</td> </tr> <tr> <td rowspan="6" style="vertical-align: middle;">1. -----</td> <td>가. -----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10</td> </tr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-----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-----</td> </tr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-----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(6)</u></td> </tr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-----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(4)</u></td> </tr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-----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(6)</u></td> </tr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-----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(4)</u></td> </tr> <tr> <td rowspan="4" style="vertical-align: middle;">-----</td> <td>나. -----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25</u></td> </tr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-----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(9)</u></td> </tr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-----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(7)</u></td> </tr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-----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(6)</u></td> </tr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-----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(3)</u></td> </tr> <tr> <td>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소계</u>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18</td> </tr> <tr> <td rowspan="4" style="vertical-align: middle;">2. <u>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수준</u></td> <td>가. -----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6</u></td> </tr> <tr> <td>나. <u>공금예금 적용 금리</u>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5</td> </tr> <tr> <td>다. <u>시에 대한 대출금리</u>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4</td> </tr> <tr> <td>라. -----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3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평가분야	평가항목	배점		<u>총계</u>	100		<u>소계</u>	35	1. -----	가. -----	10	-----	-----	-----	<u>(6)</u>	-----	<u>(4)</u>	-----	<u>(6)</u>	-----	<u>(4)</u>	-----	나. -----	<u>25</u>	-----	<u>(9)</u>	-----	<u>(7)</u>	-----	<u>(6)</u>	-----	<u>(3)</u>		<u>소계</u>	18	2. <u>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수준</u>	가. -----	<u>6</u>	나. <u>공금예금 적용 금리</u>	5	다. <u>시에 대한 대출금리</u>	4	라. -----	3
평가분야	평가항목	배점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<u>&lt;신설&gt;</u>	100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1. <u>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</u>	<u>&lt;신설&gt;</u>	35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가.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	15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<u>&lt;신설&gt;</u>	<u>&lt;신설&gt;</u>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<u>&lt;신설&gt;</u>	<u>&lt;신설&gt;</u>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나. 주요 경영지표 현황	<u>20</u>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- BIS 자기자본비율	<u>(7)</u>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- 자기자본이익율	<u>(5)</u>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- 무수익여신비율	<u>(5)</u>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- 대손충당금적립율	<u>(3)</u>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<u>&lt;신설&gt;</u>	18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2. <u>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</u>	가. 정기예금 예치금리	<u>5</u>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나. <u>시에 대한 대출금리</u>	5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다. <u>공금예금 적용금리</u>	<u>5</u>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라. <u>수시입출금식 예금금리</u>	3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평가분야	평가항목	배점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<u>총계</u>	100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<u>소계</u>	35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1. -----	가. -----	10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-----	-----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-----	<u>(6)</u>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-----	<u>(4)</u>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-----	<u>(6)</u>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-----	<u>(4)</u>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-----	나. -----	<u>25</u>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-----	<u>(9)</u>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-----	<u>(7)</u>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-----	<u>(6)</u>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-----	<u>(3)</u>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<u>소계</u>	18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2. <u>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수준</u>	가. -----	<u>6</u>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나. <u>공금예금 적용 금리</u>	5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다. <u>시에 대한 대출금리</u>	4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라. -----	3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
현행			개정안		
평가분야	평가항목	배점	평가분야	평가항목	배점
3. 시민이용 편의 및 지역사회 기여도	<신설>	19	3. 시민이용 편의성	소계	19
	가. 관내 지점현황 및 지역주민이용 편리성	5		가. 지방세입금 수납처 리 능력	9
	나. 지방세입금 수납 처리능력	9		나. 관내 지점현황 및 시민이용 편리성	5
	다. 지역사회 기여실적 및 계획	5		다.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증진방안	5
4. 금고업무 관리능력	<신설>	18	4. ----- -----	소계	18
	가. 세입세출업무 자금 관리 능력	5		가. -----	5
	나. 금고관리업무 수행 능력	5		나. -----	5
	다.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능력	5		다. -----	5
	라. OCR센터 운영계획	3		라. -----	3
5. 시와 금고간 협력사업 추진능력	<신설>	10	5. 지역사회 기여 및 시와 협력 사업추진 능력	소계	10
	가. 시와 협력사업 추진실적	5		가. 지역사회 기여 실적 및 계획	5
	나. 시와 협력사업 추진계획	5		나. 시와 협력사업 추진 실적 및 계획	5

# 안산시 금고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1639
----------	------

제안년월일 : 2007. 12. 11.

제안자 : 의회행정위원장

## 1. 수정이유

- 금고 지정 시 수의계약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일부 규정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함.

## 2. 주요 골자

- 시가 경기도의 금고 금융기관을 당해 금고로 지정하는 경우와 금융기관이 안산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특정기관을 금고로 지정하는 경우에 수의 계약이 가능하도록 한 관련 규정을 삭제함(안 제3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)

# 안산시 금고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안산시 금고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제3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한다.

## 신·구조문 대비표

원 안	수 정 안
<p>제3조(금고지정) ①(생략)</p> <p>1.~2.(생략)</p> <p>3. <u>시가 경기도의 금고 금융기관을 당해 금고로 지정하는 경우로서 해당 금융기관이 재무구조의 안정성 또는 업무관리능력 등 금고업무 수행에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</u></p> <p>4. <u>금융기관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특정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하는 것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</u></p>	<p>제3조 (금고지정) ①(원안과 같음)</p> <p>1.~2.(원안과 같음)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&lt;삭 제&gt;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&lt;삭 제&gt;</p>